

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454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3. 10. 16.
4. 회부일자 : 2023. 10. 23.

II. 개정이유

-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 현행화로 회계 업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, 조례 적용 대상 확대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함

III. 주요내용

1. 조례 적용기관 확대(안 제2조제1호): ‘유치원을 제외한’문구 삭제
2. 업무추진비 정의 수정(안 제2조제1호) 및 상위 규정 명칭 변경(안 제4조, 안 제6조제1항)
3. 기존 규정 상세화 및 명칭 수정(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)
4. 업무추진비 공개 방법 수정(안 제7조제1항)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규 : 별첨 7

가.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(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)

나.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

다.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3부 성질별
기준 4. 업무추진비(230목)

2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)

3. 협 의 : 감사관, 민주시민생활교육과, 예산담당관과 협의 완료

4. 기 타

가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별첨 1

나. 입법예고(2023. 9. 14. ~ 10. 4.) :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(별첨 3)

다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라.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(별첨 4)

마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(별첨 5)

바. 학생인권영향평가 : 원안 동의(별첨 6)

사. 관계법규 : 별첨 7

아. 지방공무원 노조 의견서: 해당 없음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54호로 제출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관련 상위 법령의 제·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회계 업무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, 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등의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업무추진비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였는바,

동 개정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의 법령체계에 따른 입법의 통일성을 제고한 것으로 개정취지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나. 주요 조문별 검토

1)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-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는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자 중 ‘유치원

을 제외한 '각급 학교의 장' 을 '각급 학교의 장' 으로 개정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,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
- 먼저 업무추진비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「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에서는 업무추진비를 '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'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,

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서도 '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' 의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규정하고 있는 등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[표-1] 「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의 업무추진비 대상

<p>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업무추진비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.</p> <p>가.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, 소속 직속기관의 장 및 <u>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</u>과 보조기관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</p> <p>나.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행사,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</p> <p>2. 생략</p>

[표-2] 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의 업무추진비 대상

<p>□ 기관운영업무추진비: 시도교육청의 교육감, 부교육감, 실·국장(급), 교육지원청의 교육장, 국장, 직속기관(본청 소속)의 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</p> <p>□ 사업추진업무추진비: 시도교육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(본청 소속),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의 사업추진 업무추진비</p>
--

-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의 교육과정운영, 교육여건개선, 방과후과정운영 등의 다양한 세부사업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.

- 이와 같이 상위 법령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고,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미 다양한 세부 사업 추진시 유치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는바, 안 제2조제2호에서 ‘유치원 제외’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[표-3] 서울시교육청의 유치원 업무추진비 현황¹⁾

(단위: 원)

예산소관부서명	세부사업	예산액
유아교육과	교원연수운영	120,000
	교원인사관리	4,360,000
	교육과정운영지원	300,000
	누리과정지원	1,440,000
	사립유치원지원	4,100,000
	유아교육운영	14,620,000
	유치원교육여건개선	1,400,000
	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	800,000
유아교육진흥원	유아교육운영	3,560,000

-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것은 동 조례 제정(2018.3.19.) 이후 제정된 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(2020.11.2.)」의 업무추진비 분류²⁾를 반영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2)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- 동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은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」”으로, 같은 항 제1호 중 “물품을”을 “상품권, 기념품, 특산품 등을”로, “수령자”를 “수령자, 사용용도”로 변경하여 규정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접대성 경비”는 “업무추진비”로, “경우, 집행 품의서에”는 “경우에는”으로, “기재하

1)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

2) 기관운영업무추진비(230-01), 사업추진업무추진비(230-02)로 분류

여”는 “증빙서류에 기재하여”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제정된 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제시된 사항을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‘물품’은 ‘상품권, 기념품, 특산품 등’으로 변경하면서 ‘물품명’은 변경되지 않았고, 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업무추진비 구매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개정조례안에는 ‘물품수불부’에 기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러한 사항은 상위 법령을 반영한 사항이 일관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상위 법령의 반영 범위를 통일되게 적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.

[표-4] 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른 동 개정조례안 변경 사항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	「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」 제6조제1항	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」, 60페이지
1.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,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, 구입 및 지급일시, 수량,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	1. ----- 상품권, 기념품, 특산품 등을 ----- ----- 수령자, 사용용도 ----- ----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업무추진비로 상품권, 기념품,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,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2. <u>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, 집행 품의서에 집행 목적, 일시, 장소,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</u>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,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	2. <u>업무추진비</u> ----- - <u>경우에는</u> -----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----- ----- ----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, 일시, 장소,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,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.

- 한편 안 제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 「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」 ” 을 “ 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” 으로 변경한 것은 상위 법령 제정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3)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- 동 개정조례안 제7조는 ‘기관’ 을 ‘기관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보공개’ 홈페이지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해당 기관이 나이스시스템에 입력하면 그 자료가 교육청 정보공개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자동 업로드되고,

정보공개 홈페이지의 자료들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연동되어 공개되고 있으므로 ‘기관’ 홈페이지를 ‘기관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공개’ 홈페이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.

- 그러나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해당 ‘기관’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³⁾, 동 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는 해당 ‘기관’ 홈페이지로 규정하는 것이 규정의 복잡성 완화 및 시민의 이해도 증진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3) 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업무추진비 공통기준

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도교육청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및 각 시도교육청이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.
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칠 것입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정진국 2180-8263	입법조사관	이가영 2180-8270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